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

## 심사보고서

2022. 2. 14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월 24일

나. 발의자: 유승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2월 4일

라. 상정일자: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2. 1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청원 심사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참여 민주주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현재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」을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

청원 심사 규칙」으로 제정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상위 법령 적용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발의된 제정 규칙안임.

#### 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는 영등포구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. 이때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불수리사항을 통지하여야 함.
- 안 제5조는 접수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는 의장이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.
- 안 제7조와 제8조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청원심사에 요구시 소개한 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시 청원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11조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청원자에게

- 통지해야하며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2가지(영등포구청장이 처리 또는 의회에서 처리)로 구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.
- 안 제13조, 제14조는 청원인에 대한 통지와 청원 철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-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향조정한 규칙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주민의 권리구제와 참여 민주주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1월 일

발의자: 유승용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청원 심사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참여 민주주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현재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」을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」으로 제정.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및 관련 상위 법령 적용.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청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청원서의 제출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
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 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.

**제3조(청구서의 보완요구 등)**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

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**제4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** 의장은 청원이 「청원법」 제6조, 제16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이의신청)** ① 청원이 「청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, 소관 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청원의 회부와 심사)**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, 그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.

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성명, 주소, 청원의 취지,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.

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)**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청원인 등 진술)**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



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제척과 회피)**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**제10조 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**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

1. 국가기관이나 영등포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
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

불가능한 경우

3.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영등포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

**제11조(심사보고)** 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,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2.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
**제12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**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, 그 처리결과를

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**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

1. 청원을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
2.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
3.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
4.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
5.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

**제14조(청원의 철회)**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소개와 철회와 청원의 효력)**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징계)**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7조(청원처리대장 작성) 의회는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원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한다.

제18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」과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」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청원 소개의견서

청원건명				
청원인	성명 (명칭)	(인)	생년월일	
	연락처			
	주소			
소개의원	(인)			
소개년월일				
<u>소개의견</u>				

※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## 접 수 증

접 수 번 호 :  
건 명 :  
청 원 인 :  
소 개 의 원 :  
부 수 :

상기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**

### [ 안 내 말 씀 ]

1. 제출하신 청원은 「청원법」 제6조 및 제16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하며, 「청원법」 제16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2.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.
3. 청원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십시오.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청 원 요 지 서

접수연월일			접수번호	
청 원 인	주소		성 명	
소개의원			소관위원회	
건 명				
<u>요 지</u>				

※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## 청원철회요구서

청원건명				
청원인	성명	(인)	생년월일	
	연락처			
	주소			
소개의원	(인)			
소개년월일	청원철회일자			
<u>철회요구사유</u>				

※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

